

2016.02.24

「보세운송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

개정이유 및 시행일자

개정이유

-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 추진사업 관련하여 보세운송신고 서식 신설(변경)과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 명칭변경과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처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신고 등의 접수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일원화 함에 따라 개정이 되었습니다.

- 시행일자 : 16. 2. 26.(금)

주요내용

- ①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서식명칭 변경(제9조~제11조)
 - » 보세운송업자 등록(갱신) 신청서와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(변경) 신고서 통합에 따른 서식명칭 변경
- ② 조직개편에 따른 세관명칭 변경(제26조)
 - » 용당 및 사상세관이 북부산세관으로 통합되고 부평세관이 안산세관 부평 비즈니스센터로 변경된 사항 반영.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6.02.24

주요내용

- ③ **보세운송업자 자격요건 예시 수정(제37조)**
 - » 보세운송업자의 자격요건 예시를 화물운송주선업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수정
- ④ **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명시(제55조)**
 - » 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할 신고서 서식(보세운송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) 명시
- ⑤ **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(변경)신고 접수기관 변경(제56조)**
 - » 보세운송업자 등록·변경신청 접수처와 영업소 설치·변경신고 접수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로 일원화